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52조 관련)

1. 매출액 산정방법

법 제56조에서 “매출액”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. 다만,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.

2. 가중부과계수

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.

| 위반행위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중부과계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|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|
| 가.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    | 1.0              | 1.0                 |
| 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| 1.0              | 1.0                 |
| 다.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   | 1.0              | 0.3                 |

3. 과징금 산정방법

매출액 × 5/100 × 가중부과계수